

수신: (주)오른에너지: (영우동 340-16. 김성기)

제목: 이번 전문건설공사 도급한도액 결정 통보

1. 전기령 제 464호 (영. 6. 22) 호와 관련입니다.

2.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건설업법 제 57조 제 2항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 54조 제 1항 2호에 의거 대한 전문건설 협회로 부터 이번 전문건설공사 도급한도액이 산정 통보되어 동법 제 18조 에 의거 이번 전문건설공사 도급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통보하오니 다음 지정기일내에 도급한도액을 계약제외 면허수련에 기해 받으시기 바랍니다.

가. 도급한도액

업종	연회번호	도급한도액	비고
설비	02-12-126	₩312,026,000 원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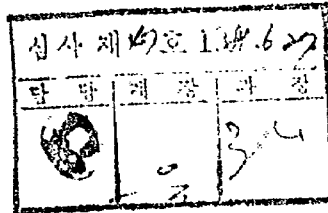
나. 기간: 영. 6. 30 까지

다. 장소: 중앙구청 건설관리과, 김.

(제 3안)

수신: 총무처 장관

참조: 법무장관



발신: 건설부 발신장

제목: 이번 전문건설공사 도급한도액 결정에 따른 건. 의뢰

1. 건설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^{건설}아연 전문공사 등
 한 단계를 결정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27조이 의거 별첨과
 같이 이하의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: 1. 고시안 2부. 끝.

(제 4 안)

수신: 서울특별시청

참조: 시민과함

제목: 관인봉인 의뢰

1. 다음내용과 같이 별첨 종류에 대하여 상당적인
 불만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직인봉인 요청 비용

종류 (별칭)	수 유 및 법 규	수량	비고
관보에의뢰공문	건설법시행령 제27조 - 아연 전문공사 등항도액 결정 고시	1	

첨부: 1. 고시외리 공문 4부 1.부. 끝.

(제 5 안)


수신: 서울특별시청

참조: 건설행정과함

제목: 아연 전문건설공사 등항도액 결정 추가보고

1. 전건형 제 46나호 (제 6. 22) 호와 관련입니다.

2. 상기이점과 관련하여 건설업법 제 18조 규정의
유대기 아닌 전문건설공사 담당도액은 별첨의 같이 추가 결정
시행하였기 보고합니다.

첨부: 1. 담당도액 결정서 1부 

고 시

비용특별회계 고시 제 3/29

89년 전문건설공사 보급양도액 결정고시
 건설업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89년도 전문건설공사 보급양도액을
 결정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이를 고시함바람.

1989. 6.

비용특별회계장

가. 89년 전문건설공사 보급양도액 결정

업종 및 연어번호	상 호	소 세	대표자	89 보급양도액 (단위:천원)
철 비 (82-12 -126)	(주)우 콘 에너지	서울, 중앙, 땅우동 340-16	김선기	362,026

나. 적용기간 : 89. 7. 1 - 90. 6. 30. 끝



대한전문건설협회

서울특별시 남대문로 1가 111호

전화 334-1111

팩스 334-1112

전건협회원 제 464 호

1989. 6. 22

수신 중랑구청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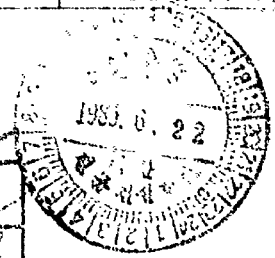
제목 '89전문건설공사 도급한도액 산정결과 추가통보

- 1. 전건협회원 제395호('89. 6. 31)의 관현입니다.
- 2. 귀구청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중 '88건설공사 실적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한 다음업체에 대하여 '89도급한도액 산정결과를 별첨과 같이 통보하오니 도급한도액 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 음

상 호	대표자	업종	소 재 지	사 유
(주)오른어네지	김선기	설비	중랑구 명우동 340-16	'88공산신적추가신고

첨 부 : '89도급한도액 책정조서 1부. 끝.



신	김선기	25	김선기	김선기
신	김선기	번호	김선기	김선기
신	김선기	번호	김선기	김선기

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상

